**「실용신안법」**

[법률 소화34<1959>년제123호, 2015.7.10. 최종개정]

**□ 개 요**

일본의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하여 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그 고안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총 9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一条　目的第二条　定義第二条の二　手続の補正第二条の三　手続の却下第二条の四　法人でない社団等の手続をする能力第二条の五　特許法の準用**第二章 実用新案登録及び実用新案登録出願**第三条　実用新案登録の要件(第三条の二)第四条　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考案第四条の二　仮通常実施権第五条　実用新案登録出願(第六条)第六条の二　補正命令第七条　先願第八条　実用新案登録出願等に基づく優先権主張第九条　先の出願の取下げ等第十条　出願の変更第十一条　特許法の準用**第三章 実用新案技術評価**第十二条　実用新案技術評価の請求(第十三条)**第四章 実用新案権****第一節 実用新案権**第十四条　実用新案権の設定の登録第十四条の二　明細書、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の訂正第十四条の三　訂正に係る補正命令第十五条　存続期間第十六条　実用新案権の効力第十七条　他人の登録実用新案等との関係第十七条の二　実用新案権の移転の特例第十八条　専用実施権第十九条　通常実施権第二十条　無効審判の請求登録前の実施による通常実施権第二十一条　不実施の場合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第二十二条　自己の登録実用新案の実施をするため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第二十三条　公共の利益のための通常実施権の設定の裁定第二十四条　通常実施権の移転等第二十五条　質権第二十六条　特許法の準用**第二節 権利侵害**第二十七条　差止請求権第二十八条　侵害とみなす行為第二十九条　損害の額の推定等第二十九条の二　実用新案技術評価書の提示第二十九条の三　実用新案権者等の責任第三十条　特許法の準用**第三節 登録料**第三十一条　登録料第三十二条　登録料の納付期限第三十二条の二　登録料の減免又は猶予第三十三条　登録料の追納第三十三条の二　登録料の追納による実用新案権の回復第三十三条の三　回復した実用新案権の効力の制限第三十四条　既納の登録料の返還(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　特許法の準用**第五章 審判**第三十七条　実用新案登録無効審判第三十八条　審判請求の方式第三十八条の二　審判請求書の補正第三十九条　答弁書の提出等第三十九条の二　審判の請求の取下げ第四十条　訴訟との関係第四十一条　特許法の準用**第六章 再審及び訴訟**第四十二条　再審の請求(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　再審により回復した実用新案権の効力の制限第四十五条　特許法の準用(第四十六条)第四十七条　審決等に対する訴え第四十八条　対価の額についての訴え(第四十八条の二)**第七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に係る特例**第四十八条の三　国際出願による実用新案登録出願第四十八条の四　外国語でされた国際実用新案登録出願の翻訳文第四十八条の五　書面の提出及び補正命令等第四十八条の六　国際出願に係る願書、明細書等の効力等第四十八条の七　図面の提出第四十八条の八　補正の特例第四十八条の九　実用新案登録要件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　実用新案登録出願等に基づく優先権主張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一　出願の変更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二　登録料の納付期限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三　実用新案技術評価の請求の時期の制限第四十八条の十三の二　訂正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四　無効理由の特例第四十八条の十五　特許法の準用第四十八条の十六　決定により実用新案登録出願とみなされる国際出願**第八章 雑則**第四十九条　実用新案原簿への登録第五十条　実用新案登録証の交付第五十条の二　二以上の請求項に係る実用新案登録又は実用新案権についての特則第五十一条　実用新案登録表示第五十二条　虚偽表示の禁止第五十三条　実用新案公報第五十四条　手数料第五十四条の二　手数料の返還第五十五条　特許法の準用**第九章 罰則**第五十六条　侵害の罪第五十七条　詐欺の行為の罪第五十八条　虚偽表示の罪第五十九条　偽証等の罪第六十条　秘密を漏らした罪第六十条の二　秘密保持命令違反の罪第六十一条　両罰規定第六十二条　過料(第六十三条)(第六十四条)**附　則** |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2조의2 절차의 보정제2조의3 절차의 각하제2조의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거칠 능력제2조의5 특허법의 준용**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제3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제3조의2)제4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제4조의2 가통상실시권제5조 실용신안등록출원(제6조)제6조의2 보정명령제7조 선출원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9조 선출원의 취하 등제10조 출원의 변경제11조 특허법의 준용**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제12조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제13조)**제4장 실용신안권****제1절 실용신안권**제14조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제14조의2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제14조의3 정정에 관련된 보정명령제15조 존속기간제16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제17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제17조의2 실용신안권 이전의 특례제18조 전용실시권제19조 통상실시권제20조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제21조 미실시의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22조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2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2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 등제25조 질권제26조 특허법의 준용**제2절 권리침해**제27조 금지청구권제2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29조 침해액의 추정 등제29조의2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제29조의3 실용신안권자 등의 책임제30조 특허법의 준용**제3절 등록료**제31조 등록료제32조 등록료 납부기한제32조의2 등록료의 감면 또는 유예제33조 등록료의 추납제33조의2 등록료 추납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회복제33조의3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제34조 기납 등록료의 반환(제35조)제36조 특허법의 준용**제5장 심판**제37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38조 심판청구의 방식제38조의2 심판청구서의 보정제39조 답변서의 제출 등제39조의2 심판청구의 취하제40조 소송과의 관계제41조 특허법의 준용**제6장 재심 및 소송**제42조 재심의 청구(제43조)제4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제한제45조 특허법의 준용(제46조)제47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제48조 대가액에 대한 소송(제48조의2)**제7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련된 특례**제48조의3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제48조의4 외국어로 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제48조의5 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등제48조의6 국제출원에 관련된 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제48조의7 도면의 제출제48조의8 보정의 특례제48조의9 실용신안등록요건의 특례제48조의10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48조의11 출원의 변경의 특례제48조의12 등록료 납부기한의 특례제48조의13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시기의 제한제48조의13의2 정정의 특례제48조의14 무효이유의 특례제48조의15 특허법의 준용제48조의16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8장 잡칙**제49조 실용신안원부에의 등록제50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제50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특칙제51조 실용신안등록표시제52조 허위표시의 금지제53조 실용신안공보제54조 수수료제54조의2 수수료의 반환제55조 특허법의 준용**제9장 벌칙**제56조 침해죄제57조 사기행위의 죄제58조 허위표시의 죄제59조 위증 등의 죄제60조 비밀누설죄제60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제61조 양벌규정제62조 과료(제63조)(제64조)**부칙** |